

● 제287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9. 6. 14.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의안번호 659

I.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1) 제출자 : 서울특별시시장
- 2) 제출일자 : 2019년 5월 23일
- 3) 회부일자 : 2019년 5월 일

2.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내역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2조 7,409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10억 원이 증액(3.0% 증가)되었고,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안(A)	기정예산(B)	증감(A-B)	증감율(%)
총계	2,740,936	2,659,972	80,964	3.0
행정운영경비	741	741	-	
재무활동	5,010	2,533	2,477	97.8
사업비	2,735,184	2,656,698	78,486	3.0
일반회계	2,688,107	2,659,972	28,135	1.1
행정운영경비	741	741	-	-
재무활동	5,010	2,533	2,477	97.8
사업비	2,682,355	2,656,698	25,657	1.0
균형발전 특별회계	52,829		52,829	-
사업비	52,829		52,829	-

3.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추경안의 개요

- 2019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이라 함)은 2조 7,409억 3,570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 6,599억 7,236만원에서 809억 6,334만원이 증액 편성(3.0%)되었음.

<표 2.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세>

(단위 : 백만원)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 감	증감률
(X953,130) 2,659,972	(X984,981) 2,740,936	(X31,851) 80,963	3.04%

- 금번 추경 편성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총지출 증가액(810억 원)은 서울시 전체 총지출 증가액에 대비하면 2.8%에 해당함.

<표 3. 서울시 및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총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19년도 추경안(A)	'18년도 기정예산(B)	증감율(%)	증감 (A-B)
◇ 서울시총예산(a)	38,679,610	35,813,918	8.0	2,865,692
◇ 여성가족정책실(b)	2,740,936	2,659,972	3.0	80,963
※ 비중(b/a)(%)	7.1	7.4	-	2.8

2 추경안 편성방향 및 주요 특징

- 서울시는 금번 여성가족정책실의 추경안에 대한 편성방향에 대하여, ① 법정의 무경비 및 법정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증감 등 변경내시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하고, ② 대기질 개선,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 실현 등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우선추경이라고 밝히고, 총 52건의 사업에 대하여 추경안을 편성함.

- 총 52건 가운데 시 자체사업 4건을 포함한 13건은 증액 사업이며, 나머지 4건은 사업예산을 감액하는 것임.

- 한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신규 편성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및 돌봄 시설 설치 예산을 이관하였음.

<표 4. 부서별·사업별 추경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추경사유
여성가족정책실(합계)		(X953,130) 2,659,972	(X984,981) 2,740,936	(X31,851) (49,112) 80,963	
여성정책담당관(소계)		(X9,565) 63,958	(X10,573) 65,828	(X1,007)(862) 1,869	
1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4,838	5,118	280	<p><시 자체> - (전액시비 28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일자리 통합브랜드 개발에 따른 간판 디자인 및 교체비 - 간판등 디자인: 30백만원 - 제작및교체: 10.4백만원*24개소=250백만원
2	여성발전센터 운영	6,489	6,759	270	<p><시 자체> - (전액시비 27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일자리기관 체질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여성발전센터 특화 사업비 편성 필요 - 50백만원*5개소=250백만원 발전센터 이용료의 제로페이 할인분에 대한 보전 (20백만원)
3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운영	5,164	5,364	200	<p><시 자체> - (전액시비 2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인력개발센터 2개소(강동, 성동) 이전 비용 각1억원 지원 - 강동: 과도한 월세로 인한 운영악화로 이전 - 성동 : 현 건물 재건축으로 조기 이전
4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X9,565) 12,865	(X10,573) 13,985	(X1,007)(112) 1,119	<p><국비매칭>-국:시=75: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일여성인턴 인원 조정 및 직업교육훈련 공모선정결과 반영, 센터 운영비 단가 조정 등으로 인한 국비변경내시 반영
여성권익담당관(소계)		(X11,785) 37,059	(X12,314) 38,967	(X528) (1,380) 1,908	
5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	(X1,705) 6,220	(X1,705) 6,221	(X0.4)(0.4) 0.8	<p><국비매칭>-국:시=50: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비 및 인건비 기준지급액 증액(여가부)에 따른 국비변경내시 반영
6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X141) 281	(X175) 349	(X34)(34) 68	<p><국비매칭>-국:시=50: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매매피해 지원시설 차량 및 비품 추가 지원에 따른 국비변경내시 반영
7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	(X169) 339	(X199) 399	(X30)(30) 60	<p><국비매칭>-국:시=50:5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매매 집결지 정비사업 등으로 성매매 여성의 개별지원 증가로 인한 국비변경내시 반영

연번	세부사업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추경사유
8	성매매위기 실태여성 자립지원	(X74) 753	(X74) 753	(X0.02)(0.02) 0.04	<국비매칭>-국:시=50:50 ○ 운영비 기준지급액 증액에 따른 국비변경내시 반영
9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X829) 2,700	(X938) 3,047	(X109)(238) 347	<국비매칭>-국:시=50:50 ○ 시설 운영비 등 국비 기준지급액 증액에 따른 국비변경내시 반영 (국비 109백만원, 시비 108백만원) <시 자체> - (전액시비 130백만원) ○ 시설 종사자 증원에 따라 처우 개선비 및 복지포인트 예산 반영 - 처우개선비 129백만원, 복지포인트 1백만원
10	가정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X17) 128	(X18) 131	(X0.8)(2.2) 3	<국비매칭>-국:시=50:50 ○ 자립 상담원 인건비 상승에 따른 국비 확정내시 반영(관악구 보호시설 1인) (국비 0.8백만원, 시비 0.8백만원) <시 자체> - (전액시비 1.4백만원) ○ 시비지원시설(강북구 보호시설) 자립상담원 인건비 지원(1인)
11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X571) 1,934	(X809) 2,741	(X237)(569) 806	<국비매칭>-국:시=50:50 ○ 신규 상담소 4개소 지원 결정에 따른 국비변경내시 반영 - 4개소 운영비 475백만원 (국비 237백만원, 시비 237백만원) <시 자체> - (전액시비 332백만원) ○ 시설 종사자 증원(16명)에 따라 처우 개선비 및 복지포인트 예산 반영 - 처우개선비 328백만원, 복지포인트 4백만원
12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X773) 3,091	(X866) 3,418	(X93)(234) 327	<국비매칭>-국:시=50:50 ○ 신규 상담소 2개소 지원 결정에 따른 국비변경내시 반영 - 운영비 : 93백만원*2개소=186백만원 (국비 93백만원, 시비 93백만원) <시 자체> - (전액시비 141백만원) ○ 시설 종사자 증원에 따라 처우 개선비 반영 - 운영비 : 71백만원*2개소=141백만원
13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X1,806) 3,871	(X1,811) 3,880	(X5)(4) 9	<국비매칭>-국:시=50:50 ○ 위기형 해바라기센터 2개소 운영비 부족분 추가 편성으로 인한 국비변경내시 반영

연번	세부사업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추경사유
14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역량 강화사업	0	(X20) 40	(X20)(20) 40	<국비매칭>-국:시=50:50 ○ 여성가족부 시범사업으로, 신규 보호시설 1개소 지원 결정에 따른 국비변경내시 반영 - 맞춤형 정서지원, 직업훈련, 사후관리 등
15	국고보조금 반환	0	246	246	○ 과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보육담당관(소계)		(X594,858) 1,833,343	(X598,404) 1,849,197	(X3,545) (12,309) 15,854	
16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158,405	159,891	1,486	<시 자체> - 시:구= 50:50(사비 1,486백만원) ○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전액 지원 - 현원 40인 미만 어린이집 영아반 3개반까지 지원 → 모든반 지원
17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X81,361) 250,512	(X83,617) 256,452	(X2,256)(3,684) 5,940	<국비매칭>-국:시:구=30:49:21 ○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추가지원 결정(33개소, 약 381명)에 따른 국비변경내시 반영
18	어린이집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지원	(X16,710) 63,347	(X16,710) 68,516	5,170	<시 자체> - 시:구=50:50(사비 5,170백만원) ○ 시비 보조교사 지원 사업비 부족분 편성(6개월분) - 1,771명*973천원*0.5*6개월=5,170백만원
19	가정양육수당 지원	(X114,127) 211,769	(X144,781) 212,983	(X654)(560) 1,214	<국비매칭>-국:시:구=45:38.5:16.5 ○ 가정양육수당 764명분 추가 반영된 국비변경내시 반영
20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X75) 1,767	(X75) 1,791	23	<시 자체> - (전액시비 23백만원) ○ 서울시 장애아 지원프로그램의 효과적 추진 및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장애아 특수교사 총괄 인력 인건비 편성(1인,6개월) - 3,870천원*6월(공무원 8급 6호봉 기준)
21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X125) 3,980	(X425) 4,430	(X300)(150) 450	<국비매칭>-국:시:구=50:25:25 ○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 설치 신규 선정(6개소)에 따른 국비변경내시 반영 - 75백만원*6개소=450백만원
2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X8,125) 68,320	18,991	(X△8,125)(△41,204) △49,329	<특별회계이관>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중 기 집행된 비용을 제외한 어린이집 설치비를 감액하여 '19.1.3.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2조 신설에 따른 지역균형 발전 사업으로 이관

연번	세부사업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추경사유
23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X899) 1,348	(X1,234) 1,852	(X335)(168) 503	<국비매칭>-국:시:구=50:25:25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133개소 → 157개소)에 따른 국비변경내시 반영
24	어린이집 기능보강(자체)	700	1,200	500	<시 자체> - (전액시비 500백만원)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콘텐츠 보일러 교체 지원 - 1백만원*500개소=500백만원
25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3,009	3,577	569	<시 자체> - (전액시비 569백만원) ○ 장애아보육도우미 43명 확대, 치료사 및 운전원 인건비 현실화 - 장애아보육도우미 : 413백만원 - 치료사 인건비 : 130백만원 - 운전원 인건비 : 26백만원
26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균특)	-	(X8,125) 49,329	(X8,125)(41,204) 49,329	<특별회계이관>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중 기 집행된 비용을 제외한 어린이집 설치비를 '19.1.3.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2조 신설에 따른 지역균형 발전 사업으로 이관하여 신규 요구
가족담당관(소계)		(X301,232) 600,159	(X327,410) 641,746	(X26,178) (15,409) 41,587	
27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1,293	1,311	18	<시 자체> - (전액시비 18백만원) ○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프로그램 전담인력 인건비 - 3백만원*6월*1명=18백만원
28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X1,203) 3,745	(X800) 3,591	(X△402)(248) △154	<국비매칭>-국:시:구=30:20:50 ○ 국고보조금 국비 매칭 비율 변경에(국비100→국30시20구50)에 따른 국비변경내시 반영
29	취약위기가족지원	(X383) 604	(X390) 614	(X7)(4) 11	<국비매칭>-국:시:구=50:25:25 ○ 국비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30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320	570	250	<시 자체> - (전액시비 250백만원) ○ 1인가구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 확대(25개) - 10백만원*25개=250백만원 - 1인가구 증가율 급증('17년 1인가구 31%) 및 가족다양성 국민 여론조사 결과 1인가구에 대한 지원정책 시급

연번	세부사업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추경사유
31	이동수당 지원	(X264,935) 388,585	(X291,247) 427,447	(X26,312)(12,550) 38,862	<p>〈국비매칭〉-국:시:구=60:28: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수당 지급 기준 개정(만6세 미만 아동 소득·재산 기준 폐지('19.1~) 및 만7세미만 모든 아동으로 대상 확대('19.9~)으로 대상자 79,000여명 추가에 따른 국비변경내시 반영
32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X2,291) 4,910	(X2,337) 5,002	(X46)(46) 92	<p>〈국비매칭〉-국:시:구=50:50: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기준변경(기관당 기준인원17명)에 따른 운영비 증액으로 국비변경내시 반영
33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77,144	77,294	150	<p>〈시 자체〉 - (전액시비 15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 꿈나무마을 민원(700건이상), 베이비박스· 학대피해아동 지속증가 등 정책환경 분석을 통한 가정중심 보호체계로의 개편 시급
34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X1,315) 2,630	(X1,315) 2,730	100	<p>〈시 자체〉 - (전액시비 1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건립공사 전 타당성 조사 시행을 위한 예산편성 - 타당성조사는 보건복지부 지침 상 국비 미지원으로, 시비 편성 필요
35	요보호아동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X1,976) 5,851	(X1,976) 5,861	11	<p>〈시 자체〉 - (전액시비 11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공동생활가정(65개소)에 투척식 소화기 보급 - 투척식소화기: 35천원*3세트*65개소 - 화재감지기: 20천원*3개*65개소
36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X571) 1,427	(X683) 1,708	(X112)(169) 281	<p>〈국비매칭〉-국:시:구=40:60: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 산출 변경에 따른 국비확정내시 반영 - 월별 평균 지원아동 및 금액 등 산출에 따른 증액분 편성
37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X5,040) 7,561	(X5,144) 7,716	(X104)(51) 155	<p>〈국비매칭〉-국:시:구=66.7:33.3: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구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 반영
38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SIB)	-	1,391	1,391	<p>〈시 자체〉 - (전액시비 1,391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교육 성과보상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비(맞춤형프로그램지원) 및 성과금 - 협약서 상 사업비 및 성과금 편성 - 사업비 1,071백만원 - 성과보상금 321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추경사유
39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1,121	1,205	84	<p>〈시 자체〉 - (전액시비 84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 가사지원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서비스 확대 (100가구 추가) - 35천원*100가구*월4회*6월
40	국고보조금반환	-	336	3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아이돌봄담당관(소계)		(X30,815) 100,847	(X30,933) 119,735	(X117) (18,771) 18,888	
41	아이돌봄 지원	(X13,966) 32,573	(X13,966) 32,645	72	<p>〈시 자체〉 - (전액시비 72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보미 대상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을 위한 수당 및 강사비 - 수당 3200명*2시간*10천원=64백만원 - 강사비 300천원*25개소 = 8백만원
42	공동육아나눔터 및 열린육아방 운영지원	(X267) 2,093	(X350) 2,613	(X83)(437) 520	<p>〈국비매칭〉-국:시:구=30:35:3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국비변경내시 반영 (국비 83백만원, 시비 97백만원) ○ 열린육아방 조기 조성으로 운영비 부족분 추가 편성 : 20개소 → 38개소 ○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9백만원) ○ 열린육아방 연계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지원 사업(약 46팀 지원, 171백만원) <p>〈시 자체〉 - 시:구=50:50 (시비16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린육아방 조기 조성으로 운영비 부족분 추가 편성 : 20개소 → 38개소 ○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9백만원) ○ 열린육아방 연계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지원 사업(약 46팀 지원, 171백만원)
43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보조)	(X8,491) 28,305	(X8,518) 28,392	(X26)(61) 87	<p>〈국비매칭〉-국:시=30:7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신규시설개소 및 기존시설 정원 증원으로 인한 국비변경내시 반영
44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X1,145) 3,360	(X1,153) 3,384	(X8)(16) 24	<p>〈국비매칭〉-국:시=30:7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 및 구립 청소년시설 창의·융합 프로그램 추가 지원에 따른 국비변경내시 반영
45	다함께 돌봄(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 설치	-	12,794	12,794	<p>〈시 자체〉 - (전액시비 12,794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키움센터 임차료 지원 - 500백만원*25개소=12,500백만원 ○ 키움센터 서울케어 브랜드 적용 현판제작(98개소) - 3백만원*98개소=294백만원
46	거점형키움센터 조성	-	3,500	3,500	<p>〈시 자체〉 - (전액시비 3,5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내 초등돌봄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형 키움센터 1개소 설치 ※ '21년까지 10개소 설치

연번	세부사업	기정예산	추경예산	증감	추경사유
47	국고보조금반환	-	1,890	1,890	◦ 과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외국인다문화담당관(소계)		(X4,845) 23,850	(X5,320) 24,708	(X475) (383) 858	
4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X1,199) 5,242	(X1,307) 5,612	(X108)(262) 370	<p>〈국비매칭〉-국:시=30:70</p> <p>◦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운영비) 신규 추진에 따른 국비변경내시 반영 (국비 108백만원, 시비 252백만원)</p> <p>〈시 자체〉 - (전액시비 10백만원)</p> <p>◦ 여가부 호봉기준표 상승에 따른 명절휴가비, 연장근로수당 등</p>
49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운영	(X3,478) 6,996	(X3,824) 7,833	(X346)(491) 837	<p>〈국비매칭〉-국:시=50:50</p> <p>◦ 특화사업 단가 상승에 따른 국비확정내시 반영 (국비 346백만원, 시비 346백만원)</p> <p>〈시 자체〉 - (전액시비 145백만원)</p> <p>◦ 방문교육지도사(210명) 처우개선비 지급 예산 반영</p>
50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	(X168) 168	(X189) 630	(X21)(441) 462	<p>〈국비매칭〉-국:시=30:70</p> <p>◦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설치비) 신규 추진에 따른 국비변경내시 반영</p>
51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8,198	7,382	△816	<p>〈시 자체〉 - (전액시비 △816백만원)</p> <p>◦ '19.1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업무 이관에 따른 감액</p>
52	국고보조금반환	-	5	5	◦ 과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 부서별 주요 증감 사유 및 내역

○ 부서별 주요 추정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표.4> 참조), 우선 ‘여성정책담당관’ 소관 사업은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여성발전센터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운영’ 등 총 4건의 사업에서 18억 6,909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 3건의 사업이 시 자체 사업을 증액하는 것이고, 1건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분 증액을 위한 것임.

- 아래 3건은 시비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임.

-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사업비 전액
: 여성일자리 통합브랜드 개발에 따른 간판 디자인 및 교체비
- ‘여성발전센터 운영’ 사업비 전액
: 시범사업으로 여성발전센터 특화 사업비 편성
-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운영’ 사업비 전액
: 여성인력개발센터 2개소(강동, 성동) 이전 비용 각 1억 원 지원

○ ‘여성권익담당관’ 소관 사업은 총 11건의 사업에서 19억 778만 원이 증액됨. 이들 사업의 대부분은 국비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추가 확보를 위한 것이며, 나머지 1건은 이전 연도에 미납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한 것임.

- 아래 3건은 시비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임.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비 일부
: 시설 운영비 등 국비 기준지급액 증액을 반영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매칭 시비 및 시설 종사자 증원에 따라 처우 개선비 및 복지포인트

- ‘가정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비 일부
 - ： 자립 상담원 인건비 상승을 반영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매칭 시비 및 시비지원시설(강북구 보호시설) 자립상담원 인건비 지원(1인)
 -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사업비 일부
 - ： 신규 상담소 4개소 지원 결정을 반영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매칭 시비 및 시설 종사자 증원(16명)에 따라 처우 개선비 및 복지포인트
 -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사업비 일부
 - ： 신규 상담소 2개소 지원 결정을 반영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매칭 시비 및 시설 종사자 증원에 따라 처우 개선비 및 복지포인트
- ‘보육담당관’ 소관 사업은 총 11건의 사업에서 총 158억 5,387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 5건의 사업이 시 자체사업을 증액하는 것이고, 4건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분 증액을 위한 것이며, 2건은 '19. 1. 3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2조 신설에 따라 지역균형 발전 사업(‘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신설하고 일반회계에서 감액하는 건임.
- 아래 5건은 시 자체사업으로 시비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임.
-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전액
 - ：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전액 지원
 - ‘어린이집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지원’ 전액
 - ： 시비 보조교사 지원 사업비 부족분(6개월분)
 -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전액
 - ： 장애아 특수교사 총괄 인력 인건비(1인, 6개월분)
 - ‘어린이집 기능보강(자체)’ 전액
 -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간어린이집 콘덴싱 보일러 교체 지원
 -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전액
 - ： 장애아보육도우미 43명 확대, 치료사 및 운전원 인건비 현실화

○ ‘가족담당관’ 소관 사업은 총 14건의 사업에서 총 415억 8,666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 7건의 사업이 시 자체사업을 증액하는 건이고, 6건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나머지 1건은 이전 연도에 미납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한 것임.

- 아래 7건은 시 자체사업으로 시비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임.

-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전액
: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프로그램 전담인력 인건비(1명)
-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전액
: 1인가구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 확대(25개)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전액
: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전액
: 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 건립공사 전 타당성 조사 시행
- ‘요보호아동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전액
: 아동공동생활가정(65개소)에 투척식 소화기 보급
- ‘아동복지시설 아동교육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전액
: 아동교육 성과보상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비(맞춤형프로그램지원) 및 성과금
-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운영’ 전액
: 한부모가족 가사지원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서비스 확대

○ ‘아이돌봄담당관’ 소관 사업은 총 7건의 사업에서 총 169억 9,757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 3건의 사업이 시 자체사업을 증액하는 건이고, 1건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반영과 시 자체사업을 증액하기 위한 것임.

- 아래 4건은 시비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임.

- ‘아이돌봄 지원’ 전액
 - : 아이돌보미 대상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을 위한 수당 및 강사비
- ‘공동육아나눔터 및 열린육아방 운영지원’ 일부
 -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 국비변경내시에 따른 매칭 시비 및 열린육아방 조기 조성으로 운영비 부족분,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열린육아방 연계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지원 사업
- ‘다함께 돌봄(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 설치’ 전액
 - : 자치구 키움센터 임차료 지원 및 키움센터 서울케어 브랜드 적용을 위한 현판 제작
- ‘거점형키움센터 조성’ 전액
 - : 지역내 초등돌봄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형 키움센터 1개소 설치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소관 사업은 총 5건의 사업에서 총 8억 5,79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 1건의 사업이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는 것이고, 2건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 매칭분을 반영과 시 자체사업을 증액하는 것이며, 1건은 시 자체 사업을 감액하는 것이고, 감액(1건)을 위한 것이며, 나머지 1건은 이전 연도에 미납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한 것임.

- 아래 3건은 시비사업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것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일부
 - : 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운영비) 신규 추진을 반영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매칭 시비 및 여가부 호봉기준표 상승에 따른 명절휴가비, 연장근로수당 등
-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운영’ 일부
 - : 특화사업 단가 상승을 반영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른 매칭 시비 및 방문교육지도사(210명) 처우개선비
-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전액
 - : '19.1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업무 이관에 따른 감액

1) ‘거점형키움센터 조성’ 사업

◆ 사업 및 추경 개요

- 동 사업은 일반형 키움센터가 아동 20명 가량이 이용하는 소규모 시설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제공 및 상담실 운영, 양육자 교육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기능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지역 내 초등 돌봄 허브 역할을 수행할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하려는 것으로,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 5>와 같음.

<표 5. 거점형키움센터 조성 사업 내용>

구분	내용
기능	초등 돌봄기관 거점으로서, 아동주도의 문화·예술 체험형 놀이·학습기회 제공하고, 지역내 돌봄자원의 연계, 일반형키움센터·지역아동센터 등 중소규모 돌봄기관의 컨설턴트 역할 수행
운영	시립시설로 운영하고, 통학차량 운영을 통해 일반형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과 연계하여 아동 이동의 안전성과 접근성 강화
입지	주변 초등돌봄자원, 기관 등과의 연계 가능성, 학교 등 교육인프라, 돌봄수요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입지 선정 추진
규모	아동 1명당 최소 7㎡ 이상 면적으로 선진국 수준 공간제공 * 100명 이상 아이들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 최소 1,000㎡ 이상 규모 추진

- 동 사업은 거점형키움센터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시설비 과목으로 35억 원을 신규로 편성한 건으로, 전액 시비 사업임.

<표 6. '거점형키움센터 조성', '19년 추경안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 3,500,000	(x-) 0	(x-) 3,500,000	
시설비	(x-) 3,500,000	(x-) 0	(x-) 3,500,000	◦ 거점형키움센터 조성 = 3,500,000,000원*1개소

◆ 추경요건의 부합 여부 및 편성의 필요성

- 앞서 제시하였듯이, 추경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①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 ② 예비비 사용·세출조정 등 다른 수단을 통한 상황극복이 곤란한 보충성 ③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 편성하도록 하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
- 서울시는 동 사업에 대한 추경 사유에 대하여, “일반형 키움센터는 소규모 시설로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제공 및 상담실 운영, 양육자 교육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 내 초등 돌봄 허브 역할의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를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기능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 아이돌봄담당관에서 제출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계획(아이돌봄담당과-5538, 2019.4.29.)”을 따르면, 1개소 설치에 35억 원이 소요되며, 추경을 통해 설치하는 거점형 센터는 '20년 1월 개소를 목표로 연내 설치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운영비 10억 원은 포함되지 않았음.

<표 7. 거점형 설치 추진 계획>

공간 확보

- 우리시 소유(예정 포함) 자산 중 유휴공간을 활용 거점센터 설치
- 다만, 현재 시 소유 가용자산 공간은 시설용도가 기 확정되어 있으며, 매입·신축은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로 단기간내 센터설치가 힘든 상황

- ▶ (단 기) 접근성 좋은 입지를 임차로 확보 거점센터를 임시 운영
- ▶ (중장기) 기부채납 공공시설 등에 이전 입주해 운영안정성 확보

필요예산 조치

- 필요 예산규모 : 개소당 45억원, '21년까지 10개소 500억원 투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목 표(개소)	10	1	4	5
예 산(억원)	500	35	190	275

- 임차료 및 리모델링비(전용면적 1,000㎡ 기준) : 개소당 35억원 투자

※ 예) 서서울예술교육센터(1,190㎡) 리모델링비 25억원 소요(김포 가압장 활용, 임차료 미소요)

- 운영비, 인건비 등 센터운영비 : 개소당 10억원 편성

- 예산조치 : ('19.) 추경예산 확보 → ('20.~) 본예산 확보 사업추진

- 거점형센터 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보증금을 포함한 임차료 6억 원, 설계·감리 및 공사비 18억 원, 기자재비 6억 원, 통학버스 구입 6억 원을 구성되어 있음.
- 임차료는 구로, 강동, 성동, 마포, 강서, 영등포 기준으로 부동산 시세를 반영한 것으로 최종 10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는 점을 판단할 수 있음.

- 한편 거점형센터 설치 예산 35억 원 중 설계·감리 및 공사비 등은 한번 집행하고 나면 변경이나 수정이 어려운 예산으로 임대부지에 1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센터 유지의 안정성 등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8. '거점형키움센터 설치' 세부 산출 내역>

□ 거점형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추진 추정 산출 근거

- 소요예산 : 총35억 ※ 전용면적 1,000㎡이상의 공간 확보 예정
 - 임차료 : 6억 (보증금 포함)
 - '19년 3~4월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및 온라인포털 활용 6개 자치구(구로, 강동, 성동, 마포, 강서, 영등포) 대형 공간 임차료 시장조사 결과 (보증금/임차료 : 21,262만원/2,126만원 ~ 70,000만원/5,000만원) 참조
 - 설계·감리 및 공사비 : 18억
 -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비 지원기준 [신축비(건축면적×2,917천원/㎡)×65%] 을 참조해 산출
 - 기자재비 : 6억
 - 친환경 제품 활용 문화·예술·체육체험 공간 등 다양하고 넓은 공간 구성을 위한 기자재구입
 - 과학기술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VR체험 등 디지털 공간 구비를 위한 장비 구입
 - CCTV설치, 공기청정기 설치 등 각종 아동안전보호 설비용품 구입 등
 - 통학버스 구입 : 5억
 - 45인승 전기차 구입 및 아동이용차량 안전시설 등 설치

-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간 확보에 있어 임대 방식 외에 비용을 줄이고, 시설 유지의 안정을 높이기 위해 시 소유 공공부지의 활용을 기본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19년 4월 현재 2개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됨.

- 다만 현재 확보된 부지의 경우, 기부채납 방식으로 각각 '21년과 '22년에 준공이 예정되어 집행부의 추진 일정을 고려할 때, 금번 추경안에 따른 1호 거점형 센터 설치에는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표 9. 공공부지 내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 예정지 현황>

유형	위 치	공공시설 입지, 확보방법 (시설용도)	토지면적		준공 예정
			m ²	3.3m ²	
거점	용산구 한강로 2가 2-350	청년주택 개발사업 / 기부채납 지하2층, 커뮤니티시설 내	2,287	693.0	'21.02
거점	강서구 화곡동 1027-50 일대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 기부채납 3~4층, 여성능력개발센터와 복합설치	1,500	454.5	'22.12

※ 거점형 1000m² 이상 면적 확보, 2019년 4월말 기준

- 한편 우리동네 키움센터와 관련하여서는 '18년 추경안에도 센터 설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핵심과제를 추경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해 확보하지 못한 바 있음.
- 특히 거점센터는 기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보다는 일반센터에서 제공할 수 없는 문화·예술 체험 등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추경을 통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시급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음.

- 일단 공간을 조성한 이후에는 변경이나 수정이 어려운 매몰비용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20년 본예산을 통해 장소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을 기초로 편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지역아동센터와의 상생 방안 및 초등방과후돌봄 정책의 통합적 추진 필요

- 현재 서울시에는 433개 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은 국민기초생활 급여 수급을 하거나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아동이 주 이용 대상(이용아동의 70%)이 되고 있음.
- 키움센터 설치·지원 사업 추진 초기 단계부터, 의회차원에서 이용아동 기준에 제한이 있는 지역아동센터와의 중복 문제와 이로 인해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기하고 있는 취약아동 이용 제한에 따른 아동 차별 및 낙인 문제, 포괄 예산 지급으로 인한 센터 운영에 어려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요구해온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시장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책토론회(2019.4.25.)를 열어 지역아동센터의 요구사항을 청취한 바 있으며, 향후 정책 집행에 있어 지역아동센터 운영 상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안을 도출하여, 아동돌봄의 두 주체 간의 상생 방안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임.

<표 10. 시설별 비교>

구 분	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 국정과제 48-3(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이용대상	소득과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6~12세 초등학생	중위소득 100%이하 지역사회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이용료	10만원 범위 내 가능	없음
지원내용 (서비스)	· 시간제 돌봄, 긴급 돌봄 · 문화·예술·스포츠 프로그램 운영 · 등하원지도, 간식(또는 급식) 제공 · 돌봄 상담 및 마을서비스 연계 ※ 지역에 따른 프로그램 자율 결정	· 교육사업(기초학습지도, 특기적성, 안전 교육) · 복지사업(급식, 상담 등) · 문화, 예술사업(공연관람, 체험학습 등) ※아동보호 종합 서비스 제공

2) ‘다함께 돌봄(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 설치’ 사업

◆ 사업 및 추경 개요

- 동 사업은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한 우리동네 키움센터 신규설치 94개소 중 25개소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하고, 서울시 돌봄 통합브랜드인 ‘서울케어’를 적용하기 위한 현판제작비를 보조하려는 내용임.

- 금번 추경안에서 전액 시비 신규 사업으로 127억 9,400만원이 편성됨.

<표 11. ‘다함께 돌봄(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 설치’, ‘19년 추경안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 12,794,000	(x-) 0	(x-) 12,794,000	
자 자 본 보 체 조	(x-) 12,794,000	(x-) 0	(x-) 12,794,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동네키움센터 공간확보 임차료 500,000천원*1개소*25개 자치구 =12,500,000천원 ◦ 우리동네키움센터 현판제작 3,000천원*98개소 =294,000천원

◆ 추경요건의 부합 여부 및 편성의 필요성

- 집행부는 금번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우선 임차료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 사업이 추진되면서 많은 수요(설치요구 민원 등)가 파악되고 있으나, 공공시설·유희공간의 확보만으로는 초등아동 이용에 적합한 위치 및 시설 조건을 갖춘 공간을 적시에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워, 임차료 지원을 통해 「우리동네키움센터」를 단순히 유희공간이 아닌, 초등돌봄수요 과잉지역, 긴급 초등돌봄 필요지역 등에 적정 공간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초등 돌봄공백을 적극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음.

- 현재 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19년 94개 소 추가 설치와 기 설치된 4개소를 포함한 운영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음.

<표 12. 임차료 지원액 산출 내역>

□ 일반형우리동네키움센터 임차료지원액 : 125억 원

- 총 125억 원 = 25개소 × 5억 원
- 25개소 산정 근거
 - 일반형키움센터(목표달성 2개소 및 철회 등 변수 8개정도) 및 지역아동센터와의 상생형인 융합형(15개소)키움센터
- 임차료 지원 단가 산정 근거
 - 서울 아파트 실거래 중위가격(약 8억3천만원)에 대해 60% 전세가율을 적용 산출
 - ※ 1~4차 선정심사결과 키움센터 설치 최소면적(66㎡) 전세금 : 평균3.5억 정도(강북권기준)
 - ※ '20년부터는 키움센터 임차료 본예산 편성 추진

○ 금번 추경안에 따른 키움센터 임차료지원은 '19년 신규로 설치하는 94개 소 중 설치 예정인 25개소에 개소당 5억 원씩을 추가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특히 키움센터 확충 투자계획에 따른 융합형 17개소와 나머지 8개소는 올해 심사를 통해 선정된 곳 중 철회하거나 보류한 센터를 지원하려는 계획임.

<표 13. 우리동네키움센터」 확충 투자계획('19 ~ 22년)>

❖ 투자규모 : 총 4,544억원

- 일 반 형 : 1,747억원, 개소당 2억원 × 331개소 + 기존센터 운영비
- 거 점 형 : 600억원, 개소당 45억원 × 10개소 + 기존센터 운영비
- 융 합 형 : 197억원, 개소당 2억원 × 55개소 + 기존센터 운영비
- 아난딸로형 : 2,000억원, 개소당 500억원 × 4개소 + 기존센터 운영비

구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400개 4,544억	99개 206억	121개 698억	120개 1,884억	60개 1,756억
일반형	331개 1,747억	81개 140억	100개 460억	100개 552억	50개 595억
거점형	10개 600억	1개 35억	4개 190억	5개 275억	- 100억
융합형	55개 197억	17개 31억	17개 48억	13개 57억	8개 61억
아난탈로형	4개 2,000억	- -	- -	2개 1,000억	2개 1,000억

※ 문화시설추진단 조성 예정 아동·청소년 문화예술센터(14개)와 연계 키움센터 운영 추진

- 5개 권역별 9개소 설치 추진 (동북권·서서울 206억 투자, 5개소 기부채납, 2개소 교육청)
- 지역밀착형 예술교육센터 5개소(비강남권 대상) 75억원(5개소) 투자예정

- 융합형 17개에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와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올해 처음 추진하는 융합형센터의 안정적인 공간확보와 운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나머지 8개소의 경우 기 선정 시설 중 철회나 보류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인 점을 고려해보면, '19년 설치(예정) 시설 94개 중 일부만 5억 원의 예산을 예외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타 센터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하겠음.
- 이는 향후 센터간, 센터와 서울시간의 갈등 발생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종 설치 목표인 4백개 소 기준으로 1,960억 원(392개소 x 5억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추가 투입이 발생한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센터들 간의 형평성 문제나 갈등 유발, 막대한 추가 예산 투입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9년 예산에 편성하거나, 일부 예산을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할 것임.

3)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사업

◆ 사업 및 추경 개요

- 동 사업은 1인가구는 전 연령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1인가구의 증가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는 사회적 고립과 빈곤으로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긍정적 역할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액 시비 사업임.
- '19년 동 사업의 예산은 3억 2,000만 원이고, 금번 추경안은 2억 5,000만 원이 증액(78.1% 증가) 된 5억 7,000만 원이 편성됨.

<표 14.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19년 추경안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계	570,000	320,000	250,000
사무관리비	20,000	20,000	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50,000	300,000	25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0	0	.1.30

- 증액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공모 프로그램 물량을 개소 당 1천만원씩 50개소 늘리고,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에 개소 당 3천만 원씩 30개소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표 15. 사업 확대에 따른 세부 산출 내역>

(단위 : 천원)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1,568	300	1,86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68	300	1,268	○1인가구 커뮤니티 프로그램 및 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인건비 지원 - 커뮤니티 프로그램 : 개소당 10백만원 × 50개소 = 500백만원 - 건가센터 인건비 : 3백만원 × 6개월 × 26개소 = 468백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600	-	600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지원 - 개소당 30백만원×20개소=600백만원 - 관공서 및 민간시설내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비 지원

◆ 추경요건의 부합 여부 및 편성의 필요성

- 집행부는 추경사유에 대해 “작년 시범사업 및 올 상반기의 1인가구 공간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을 추진한 결과 참여자 만족도 등 현장의 반응이 좋았고 시정운영4개년 계획에 따라 사업량 확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최근 서울시 1/3 이상의 가구가 1인가구라는 감안해보면 사업을 확대하려는 사유는 타당하다고 할 것임.
- 한편 동 사업의 2018년도 결과보고(“2018년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지원사업결과보고, 가족담당관-2327, 2019.1.30.)에 따르면 사업기간과 관련하여 기관별 추진기간이 짧아 ‘19년에는 조기 사업계획 수립·집행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있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사업기간을 3개월 앞당기는 내용이 담겨있음.

<표 16. 2018년 사업결과보고에 따른 사업추진 세부 검토의견>

사 업 추 진

- (사업기간)기관별 추진기간이 짧아 '19년에는 조기 사업계획 수립·집행 필요

※ 2018년 사업기간 : '18. 6월~12월 → '19년 3월~12월

- (프로그램)1인가구 동아리활동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가족친화프로그램(원가족 복귀 등)은 부족하므로 가족친화 활성화 필요
- (소통 및 홍보)사업수행 기관간 실무자참여 소통 채널이 부족하여 1인가구 지원사업간 협조시스템 대응 향후 마련

- 동 사업의 2019년도 추진계획("19년 서울시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사업 추진계획", 가족담당관, 2019.2.28.)에 따르면 사업결과보고에서 나온 의견보다는 전년보다는 2개월을 늘려 사업을 추진한바 있음.

<표 17. 2019년 사업추진 계획 세부내용>

공모개요

- 신청대상 : 25개 자치구청
- 안내/접수 : 2019. 3. 4(월) / 2019. 3.18(월)까지 공문접수
- 사업기간 : 2019. 4월 ~ 12월
- 지원분야 : 세부사업별 신청하되 자치구 여건에 따라 중복 신청 가능
- 지원항목 : 사업진행비, 보조인건비, 홍보비, 교통비 등
- 지원규모 : 공간지원사업(30백만원 내외), 프로그램(10백만원 내외)
※ 사업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 추진방법 : 사업 공모 후 심사·선정
- 소요예산 : 300백만원(시비 100%)

- 그런데 동 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해 현 시점에 물량을 늘리는 것은 전년 결과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업기간이 더 줄어드는 것으로, 특히 공모로 추진되는 동 사업의 특성 상, 공모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보면 사실 상 최대 5개월 이상을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집행부의 무사안일한 추경안 편성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음.

<표 18. 2019년 하반기 사업확대에 따른 세부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7월~12월(6개월)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청
- 사업비(추경) : 1,568백만원
- 사업수행주체 : 서울시, 자치구청, 건강가정지원센터·복지관 등
- 추진방법 : 자치구청 보조금 지급(자본보조, 경상보조)
- 사업의 주요내용
 -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지원(20개소,개소당 30백만원): 600백만원
 - 1인가구 커뮤니티 프로그램 지원
 - ▶ 프로그램비 : 500백만원(50개소 지원, 개소당 10백만원)
 - ▶ 인 건 비 : 468백만원(건강가정지원센터 26개소, 1명씩 월3백만원)

- 따라서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보다 면밀한 사전준비를 통해 2020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4) 기타 집행실적 저조 사업

○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별 예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아래 <표 19>와 같이 '19년 5월말 현재까지 집행율이 다소 저조한 사업들이 발견되고 있음. 2019년도 2/4 분기가 거의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예산의 집행가능 여부와 금번 추경을 통한 감액 조정 필요성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 하겠음.

<표 19. 2019년도 예산집행 30%이하 사업현황 ('19년 5월말 현재)>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불용사유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	2,474	667	1,807	27.0%	○ 입주기업선정(2월)및공예마켓등사업참여자선정(4월)하여5월부터 본격집행예정
스페이스 살림 건립 추진	19,516	2,244	17,272	11.5%	○ 건립공정에따라이행중이며,현재골조공사중으로,공사단계별완료 후집행예정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노동정책 구현	100	10	90	10.0%	○ 집행시기미도래(위원회운영및가이드라인제작(11월)등집행예정)
성주류화 정책수립 기반조성	158	15	143	9.5%	○ 집행시기미도래(성인지통계및성인지교육등용역계약체결중)
여성가족정책 거버넌스 운영	192	50	142	26.0%	○ 복지거버넌스,성평등위원회 등분과회의및실행사업등이7월이후집중진행예정임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불용사유
직장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45	11	34	25.0%	○ 상반기 폭력예방 교육강사로 지급예정(6월말) 및 추후 8회 이상 교육예정
서울#WithU센터설치,운영	70	5	65	7.1%	○ 집행시기 미도래 (용역업체선정완료)
여성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723	37	686	5.1%	○ 대상시설 2개소 중 1개소는 집행완료(시립여성보호센터, 23백만원) ○ 나머지 1개소는(건축물외벽마감재교체공사)설계용역시행중이며, 공사진행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행하여 연내 전액 집행할 예정임(시립영보자애원, 5월 말 현재 37백만원 집행)
폭력피해여성 자립지원모델 개발	52	0	52	0.0%	○ 사업진행 중으로 사업완료후 사업비 지급 예정
사이버젠더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1,000	50	950	5.0%	○ 사업진행 중으로 사업완료후 사업비 지급 예정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1,340	0	1,340	0.0%	○ 집행시기 미도래 (서울특별시간호사회와 4월 중 계약 및 1,313백만원지출원인행위, 11월에 1,313백만원집행)
보육포털사이트 유지관리	114	0	114	0.0%	○ 집행시기 미도래 (시스템업체와 4월 중 계약 및 114백만원 지출원인행위, 유지관리 종료 12월에 전액 집행)
보육인의 날 행사지원	20	0	20	0.0%	○ 집행시기 미도래 (11월행사개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8,320	17,681	50,639	25.9%	○ 7월중 집행예정
어린이집기능보강(자체)	700	90	610	12.9%	○ 6월중 수요조사, 7월초 집행예정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불용사유
기본경비-보육담당관	64	18	46	27.7%	○6월중집행예정
국고보조금 반환-보육담당관	1,933	0	1,933	0.0%	○6월중집행예정
출생축하용품 지원	7,876	1,736	6,140	22.0%	○ 계약추진 증으로 월별집행예정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679	0	2,679	0.0%	○5월중국고보조금 이교부됨에 따라하 반기집행예정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115	0	115	0.0%	○ 집행시기미도래(5 월선정,6월아동주택 계약및입주,7월집행)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2,276	343	1,933	15.1%	○4월부터보호종료 아동자립수당지급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119	33	86	27.5%	○ 매 월아동 심리치 료검 사비및 치료비 (청구금액)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6,658	1,150	5,508	17.3%	○ 분 기 별 집 행 (3,6,9,12)으로인한시 기미도래,6월집행예정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980	499	1,481	25.2%	○대상자적극발굴,6 월집행예정
동주민센터내아동돌봄센터설 치운영(시민참여)	300	0	300	0.0%	○ 설치대상선정 (6 월)후하반기에리모 델링실시에정
저출생문제극복을위한주민주 도형대안공간'마더센터'(시민 참여)	238	0	238	0.0%	○ 자 치 구 공 모 선 정 심사실시하여6월초 예산교부예정(6월)
다함께돌봄(우리동네키움센 터운영)	6,850	846	6,004	12.4%	○기운영및7~9월개 소예정센터포함3분 기운영·인건비 6월 중집행예정 ※약1,427백만원집행 예정(상반기 집행률 33.2%예정)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자체)	8,456	2,317	6,139	27.4%	○ 융 합 형 키 움 센 터 계 획 수 립 (6 월) 후 자 치 구 수 요 조 사 및 선 정심사를거쳐예산 교부예정(8월)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954	0	954	0.0%	○ 집행시기미도래(보 건복지부지침통보(하 반기)후집행예정)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불용사유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140	21	119	15.1%	○ 월 별 강의 료이월 15일지급 ○ 수 의 계약 완료 후 지급예정
세계인의날 행사	17	0	17	0.0%	○ 5월 23일 행사 개최, 6월 초 집행 완료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자체)	471	138	333	29.3%	○ 6월 중 노후 장비(예초기 등) 구매 집행 예정

5 종합 검토 의견

- 이상에서 제시한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을 종합해 볼 때, 금번 ‘2019년도 제1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역은 주로 범정의무 경비 및 범정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대한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동 추경 사유에 대한 그 불가피성은 대체로 부합한다 할 것임.
- 다만, 시비 사업을 포함하여 각 사안별로 다소 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래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우선, 금번 추경 사업의 상당수가 국비 매칭사업에 대한 반영한 시비 반영분을 확보하려는 것이나, 시비분에 대한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문제와 국고보조금의 미확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금번 추경안을 통해 편성된 시비사업(예시. 거점형키움센터 조성, 다함께 돌봄사업-설치,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등)의 경우, 사전 사업계획여부와 사업의 시급성, 연내 집행가능성, 정책효과성 및 예산효율성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요청된다 하겠음.